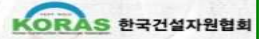


협 회 일 보



「건설폐기물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

- ◇ 공공건축물 철거 시 분별해체 적용 대상 및 범위 등 규정
- ◇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에 ‘콘크리트(레미콘 등) 제조용’ 추가

그간 협회 및 업계에서 건의한 순환골재 활용 활성화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이 반영된 「건설폐기물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31606호)이 공포('21.4.6) 되어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동 개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분별해체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「건설폐기물법」(법률 제17326호, '19.4.16 개정)에서 위임된 분별해체의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.

또한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에 콘크리트(레미콘 포함) 제조용을 추가하여 레미콘 등을 제조할 경우 순환굵은골재는 골재 용적의 최대 60%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(주요 개정내용 아래 표 참조)

금번 개정으로 공공기관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폐기물 혼합배출이 저감되고, 레미콘 등의 고부가가치 용도로 순환골재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특히, 입장휴게소 되돌림 화장실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구조물에 순환골재 사용이 가능하다는 객관적 검증자료 및 관련 품질기준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용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저조했던 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동 개정령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‘정책기획-232호’ 및 협회 홈페이지 ‘공지사항-989호’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 「건설폐기물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 주요 내용 >

구분	주요 내용												
우선 제거 대상폐기물 (제3조의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대상폐기물) 폐콘크리트, 폐아스콘, 폐벽돌, 폐블록, 폐기와, 폐목재, 폐합성수지, 폐섬유, 폐벽지, 폐금속류, 폐유리, 폐타일 및 폐도자기, 폐보드류, 폐판넬 ○ (적용예외) 동일한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동일한 처리시설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, 콘크리트에 철근이 매립된 경우 등 												
분별해체 대상 구조물 범위 (제6조의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기관에서 철거하는 바닥면적 500㎡ 이상의 건축물* * 「건축법」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제119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 이상인 구조물 												
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확대 (제4조제1항제1호라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콘크리트(레미콘 포함) 제조용 추가 ※ 순환골재 품질기준 상 콘크리트용 용도별 순환골재 최대 사용범위 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순환굵은골재(A)</th> <th>순환잔골재(B)</th> <th>혼합(A+B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사용비율</td> <td>굵은골재 용적의 60% 이하</td> <td>잔골재 용적의 30% 이하</td> <td>총 골재 용적의 30% 이하</td> </tr> <tr> <td>설계기준강도</td> <td colspan="3">27Mpa 이하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순환굵은골재(A)	순환잔골재(B)	혼합(A+B)	사용비율	굵은골재 용적의 60% 이하	잔골재 용적의 30% 이하	총 골재 용적의 30% 이하	설계기준강도	27Mpa 이하		
	구분	순환굵은골재(A)	순환잔골재(B)	혼합(A+B)									
	사용비율	굵은골재 용적의 60% 이하	잔골재 용적의 30% 이하	총 골재 용적의 30% 이하									
설계기준강도	27Mpa 이하												